

호주 · 뉴질랜드 수입식품 규제 및 정책

2022.12

[목 차]

I. 호주 뉴질랜드 식품안전관리제도	<u>1</u>
1. 개요	<u>1</u>
2. 식품안전관리제도 조직체계	<u>4</u>
II. 호주 뉴질랜드 식품안전관리제도 관련 법령	<u>7</u>
1. 식품안전관리 법령	<u>7</u>
2. 식품 원산지 표시 정보 기준	<u>11</u>
III. 호주 뉴질랜드 식품 수입규정	<u>12</u>
1. 식품 반입조건 확인과 수입허가	<u>12</u>
2. 수입식품 검사 프로그램	<u>15</u>
3. 식품 수입절차	<u>17</u>

호주 뉴질랜드 수입식품 규제 및 정책

1. 호주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국내생산, 수입산)에 대해 소비자, 식물 및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규제를 일정부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관리법(2021 최종 개정)과 생물보안법(2021 최종 개정) 및 관련 기준에 정한 수입 요건과 검역 사항 준수
 - *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법에 따라 제정, 수시 개정 적용되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지침에 정한 개별 품목별 기준 준수
- 식품기준청은 호주·뉴질랜드의 식품 영양과 관련된 공중 보건의 지원 및 식품기준코드의 개발·유지관리를 담당
 - *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미생물 허용기준을 포함한 구성, 표시 및 오염물질에 대한 식품기준을 개발하는 이중 국가 독립 법령 기관

2.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은 정부, 산업,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통일화된 식품 규제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재정된 법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 식품안전과 식품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당 등 식품 관련 업체의 설계 및 조리, 보관 관련 설비에 관한 규정, 식품 관련 광고, 표시, 성분표 등 3가지로 구성

3. 식품 수입은 농수산업부(DAFF)의 검역과 수입식품관리법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으로 관리·통제

- 상품별로 수입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해당 품목의 수입조건은 수출국이나 원산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BICON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 * 식품의 수출입 당사자는 해당 품목의 수입 전에 BICON을 방문하여 해당 품목의 호주 반입 가능여부와 필요조건 등을 확인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I. 호주·뉴질랜드 식품 안전 관리 제도

1. 개요

- 호주·뉴질랜드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국내생산, 수입산)에 대해 소비자, 식물 및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규제를 일정부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2021 최종 개정)과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2021 최종 개정) 및 관련 기준에 정한 수입 요건과 검역 사항 준수
 -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법(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에 따라 제정, 수시 개정 적용되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지침(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에 정한 개별 품목별 기준 준수
 - 식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유통 식품이 관련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음
 - 외국의 수출업체나 호주 국내의 수입업체는 호주로 수입·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통관과 검역 절차를 거치고, 입국 유통 시점에서 수입식품은 식품표준 지침에 정한 사항에 부합해야 함
 - 따라서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취급하는 식품에 대한 표준(ANZFS)을 이해하고 활용·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호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가 식품안전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며, 농수산임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가 호주 수출입 식품의 생산·유통을 관리·감독함

○ 호주 농수산임업부(DAFF)는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과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수입식품 관리수정법(Imported Food Control Amendment Act 2018)에 따라 모든 식품의 수입을 관리/통제

- 호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은 EU 등의 주요국과 달리, 수출국이나 사업자를 미리 인증하는 등 사전 규제에 중점을 두지 않음
- 통관·검역과정에서 수입식품 검사 프로그램(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을 통하여 생물보안시스템(BICON)과 호주·뉴질랜드식품 기준코드(ANZFSC)에 정한 요건과 기준의 부합 여부로 수출입 당사자의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장려
- 규제·기준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는 등 사후관리 통제 방식에 중점을 둠

○ DAFF는 2022년 7월, 농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DAWE)가 개편·재조직된 부처

- 농수자원환경부는 2020년 2월, 정부 내각 조직개편으로 그 이전 농업부와 환경에너지부가 통합하여 출범한 부처
- 수입 식품 검역 전담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던 호주식품검역검사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은 농림수자원환경부 내 조직(division)으로 흡수 통합되어 DAFF BICON 담당조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DAFF는 ANZFSC 또는 BICON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동식물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생물보안법에 정한 바에 따라 생물보안 수입 리스크 분석(Biosecurity Import Risk Analysis; BIRA)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BICON에 등재
- 이미 수입허가 등이 이루어져 수입 유통되고 있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동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질병의 유입, 유행병 확산 등의 병충해 위험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BIRA를 실시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함

〈표 I -1〉 호주의 식품수입 관련 주요 법규 체계

구분	주무부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수입식품관리법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농수산업부 (DAFF)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의 관리 및 감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기준과 공공보건 및 안전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관리 •수입되는 식품 중 위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드는 식품에 대해 검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수입식품관리규정 (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2019)	농림수산부 (DAFF)	수입식품 검사 제도(IFIS) 상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의 위해도에 따라 위해식품과 감시식품으로 분류해 차등 검사하는 수입식품 검사제도 운영
수입식품관리명령 (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농림부 장관이 필요 시 특정 식품에 대해 검사 및 분석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식품 검사제도 중 위해식품 분류
생물보안법 (Biosecurity Act 2015)		호주의 생물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염병 및 전염병을 포함한 농업 및 인간의 의료용 바이오 보안 위험을 모두 관리 •“인간, 동물, 식물 건강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 및 해충”을 처리하도록 설계
생물보안규정 (Biosecurity Regulation 2016)		생물보안 수입 위험 분석 단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보안 수입 위험 분석(BIRA)의 세부 지침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FSANZ)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동일화된 식품 규제와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기준조약 체결(1995)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 NZ) 설립(1996)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코드(ANZFSC) 수립

2.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

□ 식품기준청은 호주·뉴질랜드의 식품 영양과 관련된 공중보건의 지원 및 식품기준코드의 개발·유지관리를 담당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미생물 허용기준을 포함한 구성, 표시 및 오염물질에 대한 식품기준을 개발하는 이중 국가 독립 법령 기관
- 아울러, 호주와 뉴질랜드 식품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거버넌스 포럼을 통해 정책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식품기준코드의 기준을 개선

○ 주요 역할

- 식품 기준 개발 시 단기 및 장기 위험의 고려를 통한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
- 공중보건 및 안전의 위험 평가 시 증거 기반의 접근방식을 통해 규제를 결정
- 식이요법과 관련된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문제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에 대응
- 식품 기준을 바탕으로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 효과를 평가, 식이요법과 관련된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문제의 대응을 위해 관할구역과 기타 식품 규제 파트너들과 협력
- 호주 내 기타 주요 공공 보건 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며 정책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
- 호주 전체 식품 공급망을 포괄하는 식품기준을 개발하며, 식품 제조업과 일차 생산자들에게 적용

□ 호주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DAWE)는, 수입식품의 모든 검역 관련 정보를 관리함

- 농업 정책·연구 및 포트폴리오 전략부서, 농업 무역부서, 물·기후 적응·자연 재해 및 남극 부서, 환경 및 유산 부서, 주요 환경 개혁 부서, 생물보안 및 규정 준수 부서, 서비스 활성화 부서로 구성
- 이 중 식품안전 및 식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는 농업 정책·연구 및 포트폴리오 전략부서, 농업 무역부서, 생물보안 및 규정 준수 부서가 있음

○ 수입허가제도

- 수입제한 식품이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 절차를 밟아야 함

○ 식품 규제 및 안전 규제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및 기타 호주 정부 기관과 함께 식품 규제 정책 및 식품 기준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호주의 식품 관련 정책 및 법률 시스템으로 식품 정책 설정, 식품 기준 제정, 식품 규제 시행 등으로 공중보건과 식품의 안전을 보호
- 식품기준코드를 포함한 관련 법률의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함

○ 위해관리분석 수행

- 위해관리분석은 수입 예상 품목에 대해 호주의 검역기관인 BICON이 실시하는 심도 높은 조사 방법
- 상품이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확인은 BICON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추적 및 관리가 가능

○ 국가 잔류물질 조사

- 국가 잔류물질 조사(National Residue Survey, NRS)는 호주 동식물 제품의 화학 잔류물 및 환경 오염 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농약, 수의학적 잔류물,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동물 및 식물 제품의 테스트 실시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APVMA)은 농약·동물용 의약품의 등록을 중앙집중화하는 역할을 수행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은 1993년에 설립된 호주 정부의 법적 당국으로 호주에서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책임을 지님
 - 농업 및 동물용의약품법(1992) 및 농업 및 동물용의약품 코드법(1994)에 의해 농약 및 수의화학물질을 규제
 - 호주의 동식물에 대한 해충과 질병을 통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물용 의약품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제항목은 ①농약, 제초제, 살균제, 농약 및 종자 처리, ②의약품, 항생제, 호르몬 치료제, 일부 사료 및 애완동물 사료와 같은 동물용 화학물질, ③방충제, 정원 스프레이 및 수영장 화학물질과 같은 기타 화학물질

II. 호주 · 뉴질랜드 식품안전관리제도 관련 법령

1. 식품안전관리 법령

□ 호주 ·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은 정부, 산업,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통일화된 식품 규제 수립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

- 호주 ·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호주 ·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동 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식품 정의, 식품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한 조항을 규정

〈표 II -1〉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 구성

제1장 도입	-
제2장 당국	제1절 당국의 설립, 기능 및 권한 제2절 식품 규제 조치 제3절 향후 계획
제3장 식품 규제 조치	제1절 식품 규제 조치의 개발 또는 변경 신청 제2절 식품 규제 조치의 개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제3절 기준 초안 및 변경안에 대한 식품규제포럼의 검토 제4절 긴급 신청 및 제안 제5절 신청 및 제안 검토에 관한 일반 규칙
제4장 이사회, 최고경영자 및 당국 지원	제1절 이사회 제2절 최고경영자 제3절 직원, 컨설턴트 및 타 기관의 직원
제5장 재정	-
제6장 기타	-

자료 : 호주 · 뉴질랜드 식품기준청(www.foodstandards.gov.au)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 Code)는 식품기준청에서 제정한 식품안전관리 규정

- 식품안전과 식품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당 등 식품 관련 업체의 설계 및 조리, 보관 관련 설비에 관한 규정, 식품 관련 광고, 표시, 성분표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 -2〉 식품기준코드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
제2장	- 식품의 특정 부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제3장, 제4장	- 호주의 식품 위생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식품 일차생산 및 가공

자료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www.foodstandards.gov.au)

- 식품기준코드는 호주의 주 및 준주, 뉴질랜드의 식품법에 따라 채택되며, 다양한 정부 기관을 통해 시행됨
 - 판매 가능한 식품은 무역 관행과 관련된 법률, 환경보호 및 독극물 관리와 같은 기타 식품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식품기준코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 또는 손상, 변질, 부패 또는 식용에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함
 - 신소재 식품 출시, 새로운 공정 도입,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식품기준코드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다음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1·2장의 구성내용

〈표 II -3〉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제1장, 2장)

구분	내용
제1장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절 도입 - 제2절 표시 및 기타 정보 요건 - 제3절 식품에 첨가되거나 존재하는 물질 - 제4절 오염물질 및 잔류물질 - 제5절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 - 제6절 미생물 허용기준 및 처리요건
제2장 식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절 곡류 - 제2절 육류, 달걀 및 생선 - 제3절 과일 및 채소 - 제4절 식용 유지 - 제5절 유제품 - 제6절 비알코올 음료 - 제7절 알코올 음료 - 제8절 당류 및 꿀 - 제9절 특수 목적 식품 - 제10절 기타 식품에 대한 기준

자료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www.foodstandards.gov.au)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의 제3장, 제4장은 호주에만 적용됨

- 제3장은 식품안전프로그램을 통한 식품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
- 제4장은 가금육, 수산물, 육류, 유제품, 달걀, 난제품, 새싹, 와인의 생산 및 가공 기준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 식품기준코드의 세부 요건

○ 호주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전반적인 규격에 대해 규정

- 모든 식품은 일부 잠정적인 규격을 제외한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 생산 및 가공

-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 제4장 에는 수산물, 가금육, 육류, 유제품, 달걀, 난제품, 새싹, 와인에 대한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의 식품안전 요건을 규정함

〈표 4〉 식품별 생산 및 가공 기준

규정	내용
제4장 2.1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산물 및 이매패류의 1차 생산 및 가공 기준 - 일반수산물의 안전관리 방법, 오염 예방 및 취급 방법, 수확지역, 수산물의 저장·운송·포장 방법, 수산물의 반품·회수 방법 등에 대해 정의 - 이매패류의 수확 및 기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 갑각류 품질 보증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매뉴얼은 수확 및 저장 방법에 대해 정의
제4장 2.2 가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의 1차 생산 및 가공 기준 - 가금육 제품의 소매 판매 활동에 적용되지 않음 - 가금육 생산자는 가금육 생산자가 취급하는 가금육의 직접적인 수령인의 식별이 가능해야 함 - 가금류 취급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가금육 생산자는 가금류 취급자, 직원 및 방문객이 위생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제4장 2.3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의 1차 생산 및 즉석섭취용 육류 생산에 관한 규정 - 육류 생산자는 육류 또는 육류제품의 안전성에 적합하도록 위생관리 및 폐기물의 저장·처리를 수행해야 함 - 최종 UCFM의 대장균 수가 기준 1.6.1의 미생물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검증 또는 검증 요건의 일부로 대장균의 수를 기록해야 함 - UCFM 제작 중에는 발효 UCFM의 pH, 발효 온도 및 시간, 성숙/건조 온도 및 시간, 무게 감소 또는 수분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함
제4장 2.4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유제품 및 원유 치즈의 1차 생산요건, 수집 및 운송, 가공 기준 - 유제품 운송 사업자의 경우 제품에서 미생물학적 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시간 및 온도제어를 사용하여 운송해야 함 - 우유의 저온 살균 규정 - 치즈 또는 치즈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유 및 유제품, 치즈 및 치즈 제품을 제외한 유제품 등 유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공조건이 상이 - 원유 치즈용 우유의 생산 및 가공 요건, 운송 및 보관방법
제4장 2.5 달걀 및 난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걀의 1차 생산 및 가공에서의 식품안전관리사항, 폐기물의 처리, 위생요건, 판매 또는 공급 기준 - 달걀 생산자가 수행해야 하는 요건 - 달걀 가공업자가 난제품 가공시 처리해야하는 요건
제4장 2.6 새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싹의 1차 생산 및 가공에서의 식품안전관리사항, 폐기물의 처리, 위생요건, 판매 또는 공급 기준 - 새싹 가공업자가 수행해야하는 비즈니스, 기업 또는 활동 요건
제4장 5.1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 생산 시 사용되는 첨가제에 관한 규정 - 와인, 스파클링와인 및 강화와인의 구성 기준 - 와인 생산 시 사용되는 가공 보조제에 관한 규정

*UCFM : 즉석 육류 생산 중 최소 10분 동안 65 °C 심부 체온이 유지되지 않은 분쇄발효육
 자료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standards.gov.au), Food Standards Code

2. 식품 원산지 표시 정보 기준

□ 식품 원산지 표시 정보 기준(Count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은, 원산지 표시 요건,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판매의 정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정보 제공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

○ 식품 원산지 표시 정보 기준의 목적은 호주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원산지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는 것

- 수입 식품(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재배,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된 제품)에는 원산지가 박스에 잘 보이도록 표기
- 호주산 원료가 포함된 수입 식품에는 텍스트와 차트를 통해 중량기준으로 호주산 원료의 비율을 표시, 호주산 원료의 비율은 식품의 원료 전체의 유입중량에서 호주산 원료의 유입 중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

□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의 라벨링은 식품 원산지 표시 정보 기준의 섹션 15·16·17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식품이 여러 국가에서 온 경우, 식품이 포장된 국가 그리고 원산지 정보를 명확하게 구획된 상자 안에 표시

- 식품이 단일 국가에서 온 경우 원산지 국가를, 포장된 국가가 다른 경우 포장된 국가를 표기할 수 있음
- (섹션 15) 투명 포장에 담긴 신선과일과 야채를 제외한 포장 식품 규정,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의 1,2,1 요건을 충족
- (섹션 16) 투명 포장에 담긴 신선과일과 야채
 - 소매 판매식품에 적용되며, 소분 여부에 관계 없이 가공되지 않은 과일과 채소로만 구성
- (섹션 17) 포장되지 않은 육류, 생선, 과일 및 채소
-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식품과 혼합되었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과일 및 채소 등 식품들의 혼합

Ⅲ. 호주 · 뉴질랜드 식품 수입규정

1. 식품 반입조건 확인과 수입허가

□ 식품 수입은 농수산임업부(DAFF)의 검역과 수입식품관리법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으로 관리·통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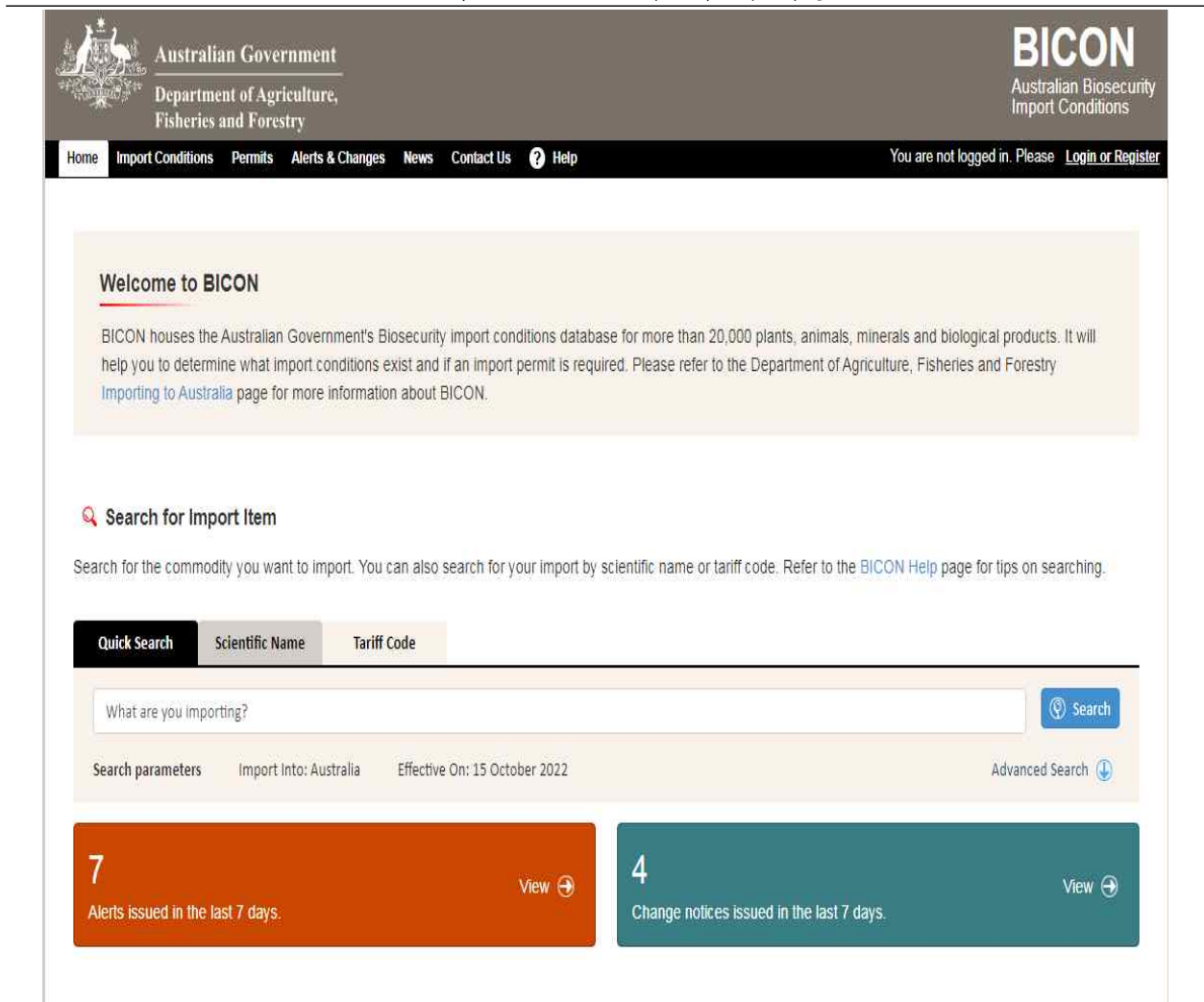
-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따르면,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등에 정한 검역 요건을 준수
 - 농수산임업부(DAFF)는 BICON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 식품의 반입 가능 여부와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수출입 당사자가 식품의 수출입거래와 운송 전에 해당 품목의 수입 가능 여부, 수입 요건, 검사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BICON은 2만 여종의 동식물, 광물 등 제품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상품의 수입가능 여부와 조건 등을 검색 확인할 수 있음

- 현행 수입규제조건은 물론 최근까지 수입된 동식물 관련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었던 제도와 그 변화를 검색
 - 수입 이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허가 필요 여부, 필요 증빙 등에 정보를 제공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화물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 수입자가 BICON 시스템을 통하여 수입허가를 신청
 - 수입허가 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BICON에 사용자로 등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된 화물은 수입자의 비용으로 반출 또는 폐기될 수 있음.

- 호주는 상품별로 수입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해당 품목의 수입조건은 수출국이나 원산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BICON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 특히, 축산과 낙농 관련 그리고 종자와 과일, 채소에 대해 엄격한 수입 요건을 적용
 - 식품의 수출입 당사자는 해당 품목의 수입 전에 BICON을 방문하여 해당 품목의 호주 반입 가능여부와 필요조건 등을 확인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그림 1>BICON 시스템 검색창



*출처: 호주 농수산업부(DAFF) BICON 검색 홈페이지

- 항공기와 선박으로 운송되는 모든 수입화물은 호주 정부에서 지정해둔 입국지점(First Points of Entry; FPOE)을 통하여 반입
 - 동 입국 지점(FPOE)에서 통관과 검역 절차를 밟게 됨

- 도착 입경 수입화물에 대해 호주 출입국관리와 국경 검역을 전담하는 국경경찰(Australian Border Force; ABF)이 수입자 또는 통관 대리인으로부터 수입신고서(Full Import Declarations; FID)를 제출함
 - 제출한 수입신고 서류가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 관련인증서와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증빙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함
- ABF는 FID를 자체 컴퓨터 네트워크인 내무부의 화물관리 통합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ICS)을 통하여 받게 되며, 제출받은 자료와 정보를 DAFF 소속 검역관에게 넘겨 수입식품검사 프로그램(IFIS)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ABF는 건강 위해 리스크가 있는 식품의 해외 공급업체들에 대한 검사 기록을 갖고 화물 반입 적격성에 대해 확인
 - 수입 화물에 대해 HS 코드에 따른 품목 신고를 받아, 현장에서 DAFF의 검역 확인 시스템(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BICON)에 연결된 네트워크로 조회 확인
- 검사대상 수입식품 화물에 대하여 식품관리증명서(Food Control Certificate; FCC,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발급하여 검사절차를 관리·통제하게 되며 동 문서는 검사 단계와 절차마다 제시되어야 함

2 수입식품 검사 프로그램

□ 라벨링 검사와 검사대상/범위 등 확인

- DAFF BICON은 수입자가 ANZFSC 라벨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
 - 필요한 경우 IFIS 검사를 받기 전에 라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제공
 - DAFF는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ANZFSC 요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 식품의 ANZFSC 요건 준수 확인 의무를 호주내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수입식품 화물에 대한 검사절차는 검사 단계와 절차마다 제시되는 식품관리증명서(FCC)를 통하여 관리/통제
 - 검사여부, 요구되는 검사의 내용과 방법, 샘플 시험검사소 활용 절차, 방법(해당 항목별 IFIS 지정 검사소 목록에서 선택 예약/수검사항) 등을 안내
 - 검사 종료 후 수입식품 검사결과보고서(electronic Imported Food Inspection Report; eIFIR)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게 됨.
- DAFF BICON 검역관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 지침 (ANZFSC) 요건에 따른 검사를 수행
 - 일차적으로 라벨링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포장을 개봉하고 오염, 부적격성 여부를 직접 확인
 - 대상 화물에 대한 검사가 라벨링과 육안검사에 국한되었다면 곧바로 수입식품검사통지(Imported Food Inspection Advice; IFIA)를 교부하여 검사 합격 여부와 불합격시 조치사항, 즉 라벨링 보완(relabel 등), 추가 검사 필요
 - 불합격시 폐기·반송 절차를 거침

□ 실물 표본채취 검사

- DAFF 검역담당자는 해당 식품의 미생물학적 상태, 잔류 농약 수준, 식품 첨가제 정확성, 영양 성분 등에 대한 시험연구실 분석검사를 위한 검사대상 표본을 채취

- 수입식품을 위험잠재식품(risk food), 감시대상식품(surveillance food), 적용협약식품(compliance agreement food)의 3개 범주로 나누고 시험 검사 수준을 결정함
- 위험잠재식품(risk food)
 - 수입식품관리령(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에 정한 분류에 따라 위험잠재식품(risk food)으로 지정된 품목을 지칭
 - 이는 다시 고위험(high risk)와 중간위험(medium)으로 분류
 - 검사의 빈도는 해당 품목 수입에 대한 과거 검사 이력을 토대로 생산자, 원산지, 관세 코드 등에 따라 정해짐

〈표〉 호주의 위험 식품(Risk Food)

구분	품목
육류	쇠고기, 소시지, 가공육, 가금류 고기
낙농품	생우유 치즈, Listeria monocytogenes의 성장을 촉진하는 치즈
어류 및 갑각류	조리된 갑각류, Carangidae, Clupeidae, Coryphaenidae, Pomatomidae, Engraulidae, Scomberesocidae, Scombridae 계통의 모든 어류, 조리된 모든 생선, 이매패류, 갈조류
과실 및 견과류	식용 베리, 석류,
채소류	피스타치오, 말린 파프리카, 말린 고추, 식용 카사바 칩,
커피	식품이 액체인 경우, 카페인 농도가 1%, 고체 또는 반고체인 경우, 5% 이상인 식품
채유용 종자	땅콩, 땅콩기름 이외의 땅콩 제품, 식용 참깨
기타	금지 식품과 곰팡이, 모유 및 모유 제품,

*출처: 호주 농림수산업부

- 관찰대상식품(surveillance food)
 - 위험잠재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을 관찰대상식품으로 지칭
 - 해당 식품은 호주의 화물통합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ICS)에 등재 저장된 전자 파일 등을 활용하여 검사절차를 진행
 - 통상 화물의 5%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진행
- 규정준수약정 수입식품(compliance agreement food; FICA 화물)
 - 호주의 수입식품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제 35A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호주 내 식품 수입업자가 정부 당국과 식품 수입 규정준수약정(Food Import Compliance Agreement; FICA)을 체결한 호주 내 식품 수입자가 취급하는 수입식품을 지칭

- 수입자는 동 FICA에 따라 자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춰 등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사절차를 진행
- 동 절차를 거친 해당 화물은 ISFS에 정한 절차로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됨.

3. 식품 수입절차

□ 호주는 식품의 구성이나 표시에 대한 사전 허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수입식품은 식품기준코드의 모든 측면을 준수해야 함

- 농수환경부는 수입된 모든 식품에 대해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며 고위험 식품은 높은 빈도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아 농수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수입식품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 IFIS)라는 위험 기반 국경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 및 통제를 받음

〈표 5〉 호주 식품 수입 단계

단계	구분	내용
수입 준비	생물보안 수입조건 시스템(BICON) 확인	- 식품 제조업자는 호주로 수출 시 BICON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BSE 인증	-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식품안전 위해도 평가를 받아야 함
	GMP 인증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였다는 인증
	수입 요건 매뉴얼	- 수입국가 요건 매뉴얼을 통해 호주에서 수출 및 수입 시 제품 및 상품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명시
수입단계	수입허가증	- BICON의 Import Condition Search를 통해 발급
	수입식품 검사체계	- 농수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입식품 검사 제도
등록단계	상표, 브랜드명 및 지적 재산권 등록	- 특허, 표, 디자인 관련 사항을 통합관리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행 및 일반요건	- 식품 회수 시스템 관리를 통해 업체의 식품 회수 실행 계획을 도움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 수입 준비단계

- 생물보안 수입조건 시스템(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
 - 병해충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호주로 수입되는 제품을 BICON을 통해 규제
 - 식품 제조업자는 BICON을 통해 호주로 수출 시 필요한 기준 및 조건 등을 확인하고 수입허가의 신청, 추적,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식품 제조업자는 호주로 수출 시 BICON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BICON 수입 허가 신청
 -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의 호주 도착일 이전에 허가증을 신청
 - 사용자 등록 후 BICON을 통해 수입허가 신청
 - 호주 농수환경부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모든 조건에 따라 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환경부 홈페이지(www.agriculture.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선적 및 수출통관서류
 - 수입 신청자는 수입 프로세스, 화물 및 비상품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승인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통제 제공해야 함
- 세관 신고
 - 관세사 및 수입 업자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통합화물관리시스템(ICS)을 활용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수입신고서에 잘못된 정보가 발견된 경우 제품 수입은 보류
 - 수입신고서 제출 시 수입식품 생산자의 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수입식품 생산자에는 제품의 재배, 포획, 제조 또는 가공된 제조업체, 가공업자, 포장업자 또는 시설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

□ 수입단계

- 식품의 수입통관은 농수환경부에서 관리하며 수입식품관리법 1992, 호주의 주 및 준주 식품 법률을 바탕으로 식품의 통관 및 검사가 실시
 - 수입 신청자는 수입 프로세스, 화물 및 비상품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승인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통제 제공해야 함

〈표 6〉 호주의 수입 단계 절차

단계	내용
수입식품 기본검사	-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수입신고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검사 실시
검사 및 검역	- 수입식품검사제도(IFIS)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수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위험식품, 감시식품으로 구분하여 검사 실시 - 검역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호주의 검역 기준에 따라 검역 실시
수입식품 적합판정	- 검사결과에 대해 수입식품검사 보고서 발급 - 적합 시 호주 관세청에 통보, 통관절차 실시 - 부적합 시 보완, 재수출, 파기 등의 조치
제세 부과	- 수입통관 절차 비용 지불
통관 절차 완료	- 통관 절차 완료

자료 : 호주 농수환경부(www.agriculture.gov.au)

□ 등록단계

- 상표, 브랜드명 및 지적 재산권 등록
 - 호주에 상표, 브랜드명 및 지적 재산권 등 등록의 경우 호주 특허청에서 수행

□ 유통단계

- 식품 사업자는 유통, 판매 및 소비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제거하고 모든 식품 사업체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gov.au)
2	호주농수환경부(awe.gov.au)
3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standards.gov.au)
4	호주 BICON 홈페이지
5	식품안전정보원
6	호주 농림수산업부(.agriculture.gov.au)